

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박진형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- 현재 서울시 전체 도로연장(8,214km)과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규모(748,655대)를 고려하면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위반 차량 단속 지점수(19개소)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,

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장착 이후 전자태그에 대한 손·망실 정도, 실제 부착 및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등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·감독이

매우 미흡한 실정이지만 관련 혜택은 과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.

이에 지난 2015년 12월 21일 「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」 개정을 통해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 5% 감면 혜택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.

이와 더불어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때까지 서울시에 제공해왔던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, 혼잡통행료 감면, 교통유발부담금 경감,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여 서울시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현행 승용차요일제 참여 촉진을 위한 혜택에서 ‘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~30% 할인’, ‘남산 1·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% 할인’, ‘교통유발부담금 20% 감면’, ‘자동차세 5% 감면’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
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
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